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톤 장기고배당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B0934)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톤자산운용(주) (02-6308-05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5년 11월 24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12월 1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 개시일(2015년 4월 1일) 이후 계속 모집할 수 있음
9.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후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으로 하여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KIS국고채1~2년×60%+KOSPI×35%+Call금리×5%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는 금융감독원에(장기고배당모 : 2014년 8월 22일 / 중장기모 : 2014년 1월 6일/ 중기채권모 : 2011년 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신탁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이하를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운용 규모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듀레이션 1.5년 수준인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과 듀레이션 4.5년 수준인 트러스톤중장기채권모투자신탁[채권]의 투자 비중을 조절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비교지수 : KIS국고채1~2년×60%+KOSPI×35%+Call금리×5%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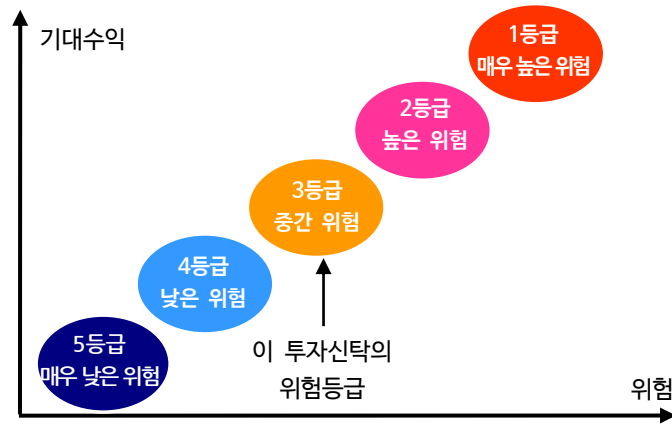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투자비중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고배당 지속가능기업, 배당성향 증가 기업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 배당의 증가로 기업가치 상향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 -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고배당 정책 지속 가능 기업에 투자 1. 정부정책 관련 배당확대가 필요한 기업 : 우선주 프리미엄을 보유한 대기업 우선주 및 지주회사 2. 꾸준한 이익으로 배당확대가 예상되는 기업 : 설비투자 불필요, 높은 유보율과 현금비중, 현재 낮은 배당 성향의 기업 3.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여 기업가치 상향가능 기업 : 고배당 정책 유지 기업의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40% 이하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table border="1"> <thead> <tr> <th>모투자신탁</th> <th>중기채권모</th> <th>중장기채권모</th> </tr> </thead> <tbody> <tr> <td>듀레이션</td> <td>1.5년</td> <td>4.5년</td> </tr> </tbody> </table>	모투자신탁	중기채권모	중장기채권모	듀레이션	1.5년	4.5년	80% 이하
모투자신탁	중기채권모	중장기채권모						
듀레이션	1.5년	4.5년						
트러스톤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1) 듀레이션(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한 만기) 전략 금리전망에 근거하여 단계적, 점증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 조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2) 일드 커브(Yield Curve) 전략							

	<p>일드 커브(Yield Curve) 전략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만기구간에 투자를 하여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확대)를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국 통화정책과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급 요인에 기초한 전략을 수립합니다.</p> <p>(3) 상대가치 전략</p> <p>상대가치 전략은 시장 기대의 쓸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p> <p>① 수익률곡선 전략</p> <p>채권은 액면가와 이자가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는 채권투자전략입니다.</p> <p>② 종목선택 전략</p> <p>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p>	
--	---	--

3.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요 운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산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지난 후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 이하를 투자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으로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트러스트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2015.10.31. 현재, 단위:개,억원)

성명	출생연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송근용	1980년	책임 운용역 (과장)	7	1,781	학력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사 <hr/> 경력 08.09~10.09 웅진루카스투자자문 주식운용 10.09~12.01 토러스투자자문 주식운용 12.01~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hr/>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CFA
		채권 운용 책임 운용역 (차장)			18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채권운용본부와 주식운용 2 본부 SME 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	펀드 코드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B5331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0%이내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Ae	B5332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25%이내	
C	B0935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Ce	B5333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W	B5334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	
I	B5335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 이상인 법인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S	B5336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없음
Cp	B5337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Cp-E	B5364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Cp2	B53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Cp2-F	B0936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	
S-P	B5339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 시기
	A	Ae	C	Ce	W	I	S	Cp	Cp-E	Cp2	Cp2-F	S-P	
집합투자 업자보수	0.400	0.400	0.400	0.400	0.400	0.400	0.400	0.400	0.400	0.400	0.400	0.400	매 3개 월 후 급
판매회사 보수	0.500	0.250	0.900	0.450	0.000	0.030	0.250	0.700	0.350	0.600	0.025	0.200	
신탁회사 보수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기타비용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사유 발생 시
총 보수 비용 (TER)	0.935	0.685	1.335	0.885	0.435	0.465	0.685	1.135	0.785	1.035	0.460	0.635	
합성 총 보수· 비용 (모투자 신탁의 총보수· 비용 포함)	0.935	0.685	1.335	0.885	0.435	0.465	0.685	1.135	0.785	1.035	0.460	0.635	
증권거래 비용	0.500	0.500	0.500	0.500	0.500	0.500	0.500	0.500	0.500	0.500	0.500	0.500	사유 발생 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3)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A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8	355	579	1,22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48	355	579	1,224
Ae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7	250	416	89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97	250	416	898
C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0	436	753	1,6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40	436	753	1,652
Ce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3	290	504	1,11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93	290	504	1,119
W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6	143	250	5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46	143	250	562
I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9	153	267	6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49	153	267	600
S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225	392	87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72	225	392	875
Cp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	371	643	1,4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19	371	643	1,418
Cp-E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2	258	448	99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82	258	448	998
Cp2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9	339	588	1,3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09	339	588	1,300
Cp2-F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8	152	264	59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48	152	264	594
S-P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7	209	364	81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67	209	364	813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 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됨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 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단,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②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③ 세액공제(2015. 1. 1. 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 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매입	<p>D (자금납입) ————— D+1 (수익증권 매입)</p>	<p>D (자금납입) ————— D+1 ————— D+2 (수익증권 매입)</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	<p>D (환매청구) — D+1 — D+2 — D+3 (환매대금 지급)</p>	<p>D (환매청구) — D+1 — D+2 — D+3 — D+4 (환매대금 지급)</p>

IV. 요약 재무재표

: 해당사항 없음